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정원 9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은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며, 공개채용1과의 명칭을 공개채용과로 변경하고,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면서 인사혁신국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송무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의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직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과장급 개방형직위의 선발을 위한 추가면접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으로 공무원의 인사·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소속으로 공무원 고충상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을 감축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기관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2.00.00. 공포, 2022.00.00.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공개채용2과에서 수행하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시험의 관리·운영 기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인재채용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5급공채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일부 직급의 정원(7급 1명)을 직렬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일부 직급의 정원(6급 3명, 9급 5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12.00. ~12.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총리령 제 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인재정책과·공개채용1과·공개채용2과·경력채용과 및 시험출제과를”을 “인재정책과·공개채용과·경력채용과·시험출제과 및 5급공채팀을”로, “수석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5급공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채용1과장”을 “공개채용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채용2과장”을 “5급공채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균형인사과”를 “통합인사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전문경력관”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인사과장”을 “통합인사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제도 개선 및 운영

8. 전문직·전문직위·전문경력관 제도 운영 및 개선

제16조1항 중 “같으며, 별표 1의 2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한다.

같은 조 2항 중 “성비위 신고 상담·조사 등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을 “성비위 신고 상담·조사 등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주식백지 심사 등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호 중 “인재정책과, 공개채용1과, 공개채용2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를 “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 5급공채팀”으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400”을 “402”로 하고, 일반직 계 “399”를 “401”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4”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2”를 “1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7”을 “21”로 하고,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2”를 “21”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3”을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4”로 하며, 운전주사보 “1”을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00”을 “401”로 하고, 일반직 계 “399”를 “400”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2”를 “14”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7”을 “21”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3”을 “12”로 하고,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3”을 “22”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3”을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4”로 하며, 운전주사보 “1”을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55”를 “154”로 하고, 일반직 계 “154”를 “153”으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1”, “공업주사 1”, “임업주사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3”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9”를 “10”으로 하고, 행정서기 “7”을 “6”으로 하며, “공업서기보 1”, “임업서기보 1”, “시설서기보 1”, “방송통신서기보 2”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로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154”를 “1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3”을 “152”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1”, “공업주사 1”, “임업주사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3”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10”을 “11”로 하고, 행정서기 “6”을 “5”로 하며, “공업서기보 1”, “임업서기보 1”, “시설서기보 1”, “방송통신서기보 2”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로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5”를 “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를 “3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2”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5급 공채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5급공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5급공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개채용과장이 분장한다.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31.>

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5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7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2명)	2024년 3월 31일까지
3)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4)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관리과	6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3. 제2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신 설>		
총계	<신 설>	1	+1
일반직 계	<신 설>	1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신 설>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인재채용국) ① (생 략)	제8조(인재채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재채용국에 <u>인재정책과</u> · <u>공개채용1과</u> · <u>공개채용2과</u> · <u>경력채용과</u> 및 <u>시험출제과</u> 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u>수석전문관</u> 으로 보한다.	② ----- <u>인재정책과</u> · <u>공개채용과</u> · <u>경력채용과</u> · <u>시험출제과</u> 및 <u>5급공채팀</u> 을 ----- ----- <u>수석전문관</u> 으로, <u>5급공채팀장</u> 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u>수석전문관</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공개채용1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u>공개채용과장</u>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⑤ <u>공개채용2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u>5급공채팀장</u>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⑤·⑥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9조(인사혁신국) ① (생 략)	제9조(인사혁신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혁신국에 <u>인사혁신기획과</u> · <u>적극행정과</u> · <u>심사임용과</u> · <u>개방교류과</u> 및 <u>균형인사과</u> 를 두	② ----- ----- ----- <u>통합인사정책과</u> -----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 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 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공 개채용1과, 공개채용2과, 경력 채용과, 시험출제과	2. ----- 공 개채용과, 경력채용과, 시험출 제과, 5급공채팀
제21조(한시정원) ①·② (생 략) <신 설>	제21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 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 신처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00	402	+2
일반직 계	399	401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	24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2	14	+2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7	21	+4
행정주사보	6	5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 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22</u>	<u>21</u>	-1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 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u>또</u> <u>는 운전주사보</u>	<u>3</u>	<u>4</u>	+1
.	.	.	
.	.	.	
운전주사보	<u>1</u>	<u><삭제></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
.	.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00</u>	<u>401</u>	+1
.	.	.	
.	.	.	
일반직 계	<u>399</u>	<u>400</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5</u>	<u>23</u>	<u>-2</u>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u> <u>또는 수석전문관</u>	<u><신 설></u>	<u>1</u>	<u>+1</u>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2</u>	<u>14</u>	+2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u>17</u>	<u>21</u>	+4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 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3</u>	<u>12</u>	-1

· 행정주사보	· <u>6</u>	· <u>5</u>	-1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 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u>23</u>	· <u>22</u>	-1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 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u>또</u> <u>는 운전주사보</u>	· <u>3</u>	· <u>4</u>	+1
· · 운전주사보	· · <u>1</u>	· · <u><삭제></u>	-1
· · 사무운영서기보	· · <u>5</u>	· · <u>4</u>	-1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총계	· <u>155</u>	· <u>154</u>	-1
· · 일반직 계	· · <u>154</u>	· · <u>153</u>	-1
· · 방송통신주사	· · <u>1</u>	· ·	-1
· · 공업주사	· · <u>1</u>	· ·	-1
· · 임업주사	· · <u>1</u>	· ·	-1
· · <u>방 송 통 신 주 사 · 공 업 주 사</u> <u>또는 임업주사</u>	· · <u><신 설></u>	· · <u>3</u>	+3
· · · 행정주사보	· · · <u>9</u>	· · · <u>10</u>	+1
· · · 행정서기	· · · <u>7</u>	· · · <u>6</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8</u>	<u>7</u>	-1
공업서기보	<u>1</u>	·	-1
임업서기보	<u>1</u>	·	-1
시설서기보	<u>1</u>	·	-1
방송통신서기보	<u>2</u>	·	-2
·	·	·	
·	·	·	
<u>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신 설>	<u>5</u>	+5
·	·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54</u>	<u>153</u>	-1
·	·	·	
·	·	·	
일반직 계	<u>153</u>	<u>152</u>	-1
·	·	·	
·	·	·	
방송통신주사	<u>1</u>	·	-1
공업주사	<u>1</u>	·	-1
임업주사	<u>1</u>	·	-1
<u>방 송 통 신 주 사 · 공 업 주 사 또는 임업주사</u>	<신 설>	<u>3</u>	+3
·	·	·	
·	·	·	
행정주사보	<u>10</u>	<u>11</u>	+1
·	·	·	
·	·	·	
행정서기	<u>6</u>	<u>5</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7</u>	<u>6</u>	-1
공업서기보	<u>1</u>	·	-1
임업서기보	<u>1</u>	·	-1
시설서기보	<u>1</u>	·	-1
방송통신서기보	<u>2</u>	·	-2
·	·	·	
·	·	·	
<u>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u> <u>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신 설>	<u>5</u>	+5
·	·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5</u>	<u>36</u>	+1
·	·	·	
·	·	·	
일반직 계	<u>34</u>	<u>35</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u>	<u>2</u>	+1
·	·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31.>

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5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7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2명)	2024년 3월 31일까지
3)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4) 율리복무국 재산심사관리과	6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3. 제2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신 설>		
충계	<신 설>	1	+1
일반직 계	<신 설>	1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신 설>	1	+1